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99
------	------

2017. 4. 2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3월 23일, 김태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4.20)상정, 제안설명,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수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7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대상에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상거래 환경의 변화와 서울시의 관련 사업 현황

- 최근 기존의 대면 결제 외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의 등장으로 거래 방식이 더욱 간편화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소비자의 수요 역시 상거래 방식의 편의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세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 도입에 뒤처지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현재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 촉진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전통시장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카드단말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가드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는 ‘간편카드결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간편카드 결제 사업 추진실적>

- 실적산정기간 : ‘14.11월~‘16.12월(누적실적)
 - 가입점포 수: 1,180개소 ※ 참여비율 : 약 1.9%(전체 61,164개 점포)
 - 가입시장 수: 29개 시장 ※ 참여비율 : 약 8%(전체 350개 시장)
 - 거래건수/ 거래액 : 1,950,264건/ 39,996백만원
 - 총지원액 : 434백만원
(가입설치비-172백만원, 유지관리비-94백만원, 무선통신비-45백만원, 소액결제수수료-123백만원)

- 또한 카드결제 장비가 없는 무점포 영세상인의 결제 편의성과 매출 증가를 위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홍보와 교육 등 지원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핀테크 시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자료 참조)

다. 종합의견

- 2016년 12월에 일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음(법 제9조 제3호)¹⁾.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변화되는 상거래 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비용, 단시간의 지원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핀테크(FinTech)의 경우 거래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기술의 안내와 설비 비용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
----------	------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23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서윤기·최관술·김제리·서영진·
신원철·우형찬·장우윤·김상훈·
김인호·최영수·김광수(도봉)
의원(11명)

1. 제안이유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제7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의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비용

나. 전제

- 비용발생 요인은 카드수수료, 가입설치비,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제
- 2018년 지원 대상 전체 점포의 일괄 가입을 전제
 - 지원대상점포 수는 유사사업인 전통시장 점포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방법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5,0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비 (제8조)	7,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25,000,000
	소계(b)	7,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25,000,000
□ 총 비용(b-a)		7,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25,00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 02-3705-1280 / e-mail : intezer@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25,000,000천원

나. 결제시스템 도입지원비 ≙ 25,000,000천원

$$\text{○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8년~2022년)

○ 연간비용 ≙ 5,000,000천원

- 카드수수료 : 월13,020원(소액거래 가맹점 수수료)×20,000점포×12월×지원율 50% = 1,562,000천원
- 가입설치비 : 150,000원×20,000점포 = 3,000,000천원
 - 2018년(1차 년도)만 발생
- 통신비 : 5,500원(점포당)×20,000점포×8.6개월(평균) = 946,000천원
- 유지관리비 : 11,000원(점포당)×20,000점포×8.6개월(평균) = 1,892,000천원
 - 지원규모 : 645,574점포²⁾×3.1%(지원규모 비율) = 20,000점포(단위 반올림)
 - 지원규모 비율 : 1,600점포³⁾ ÷ 51,744점포⁴⁾ = 3.1%
 - 지원율, 지원기간 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기준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 계
카드수수료	1,5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7,810,000
가입설치비	3,000,000	-	-	-	-	3,000,000
통신비	946,000	946,000	946,000	946,000	946,000	4,730,000
유지관리비	1,892,000	1,892,000	1,892,000	1,892,000	1,892,000	9,460,000
합 계	7,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25,000,00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예산사업설명서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예산(첨부)

2) 서울 통계표 2014년 소상공인 사업체수

3) 서울시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지원 규모

4) 통계청 2014년 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현황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 (B-A)	(B-A)*100/A
계	230,000	606,000	402,000	△204,000	△33
사무관리비	-	-	50,000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00	606,000	352,000	△254,000	△41.9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 스마트페이 50,000 이용활성화 홍보	다변화된 결제수단 홍보필요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간편카드결제 지원 606,000 - 카드수수료 229,000 - 가입설치비 150,000 - 통신비 76,000 - 유지관리비 151,000	▶ 간편카드결제 지원 352,000 - 카드수수료 125,000 - 통신비 76,000 - 유지관리비 151,000	신규 단말기 보급 중단 및 카드수수료 인하 (기존 점포만 지원)

자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